

울산광역시 동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687호

2026. 9. 10.(목)

조 례

-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울산광역시 동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 4
- 울산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8
-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특화 데이터 활용 조례 12
-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16
-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규 칙

-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28
- 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5
-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9
-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42
-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7

훈 령

-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93

회 관								
--------	--	--	--	--	--	--	--	--

편집 : 기획예산실(☎ 209-3047, 행정 3047)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2026년 9월 10일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1367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91명”을 “59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72명”을 “574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 급 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593	-			
정 무 직 계	1	-			
구 청 장	1	1			
일 반 직 계	591	-			
3급	1	1			
4급	6	5		1	
5급	41	25	2	5	9
6급 이하 계	543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1. 개정이유

-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591명 → 593명 (증 2명) (안 제2조)

- 1) 집행기관의 정원: 572명 → 574명 (증 2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1) 총 계: 591명 → 593명 (증 2명)

- 2) 일 반 직: 589명 → 591명 (증 2명)

- 5급: 40명 → 41명 (증 1명)

- 6급 이하: 542명 → 543명 (증 1명)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동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2026년 9월 10일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1368호

울산광역시 동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선배시민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그동안 축적한 지식·기술·경험을 지역사회와 나누며 후배시민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배시민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 세대 간 소통과 연대,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구민으로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구민을 말한다.
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산업현장 경험 전수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체”란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선배시민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특히 조선업 등 동구 주력산업 현장에서 축적된 선배시민의 경험이 지역사회와 후배 시민세대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선배시민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동구의 지역적 특성(조선업 등 산업 기반, 고령화 추세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2.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3. 선배시민·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4. 조선업 등 산업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선배시민이 신규·청년 근로자 및 구직자 등에게 기술, 작업절차, 현장 노하우를 나누는 경험 전수 사업
5.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안전관리자의 업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업무를 대신하지 아니하며, 기업·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기업·사업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선배시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노인복지·평생교육 관련 기관, 산업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 및 선배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선배시민 사업의 활성화, 세대 간 소통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개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계한 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기업의 경영상, 기술상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동구는 전문적인 기술과 안전관리 경험을 축적한 퇴직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이 보유한 능력이 지역사회와 후배세대에 체계적으로 전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음. 이에 따라 이러한 퇴직자를 선배시민으로 규정하여 지역사회 경험과 지혜를 보유한 능동적인 시민으로서 공동체 활동과 세대 간 소통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지원사업 및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2026년 9월 10일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1369호

울산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화재 또는 소화활동으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소유자, 임차인, 사용대차인 및 그 가구원을 말한다.
2. “주택”이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3. “임시거처”란 화재피해주민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택에서 생활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이용하는 공공 임시주거시설, 협약 숙박시설, 임시주택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화재폐기물”이란 화재 또는 소화활동으로 발생한 가재도구, 생활용품, 내장재 및 잔재물로서 피해주민의 생활공간에서 반출·운반·처리할 필요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5. “긴급생활용품”이란 식수, 식품, 의류, 침구, 위생용품, 영유아용품, 장애인 보조용품, 휴대전화 충전용품 및 그 밖에 피해주민의 긴급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제외)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화재피해주민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보험금 또는 보상금을 받는 경우
3. 화재조사 결과 고의로 인한 화재임이 밝혀진 경우
4. 피해가 경미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 비용 지원
2. 식수, 식품, 의류 등 긴급생활용품 지원
3. 화재폐기물의 반출·운반·처리 지원
4.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화재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지원의 종류별 지원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지원금 또는 지원 물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소방관서, 대한적십자사,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임시거처, 긴급생활용품, 화재폐기물 처리 등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과 조속한 일상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제외, 지원내용, 지원방법 (안 제4조~제6조)

라. 지원의 취소 및 환수,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제8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특화 데이터 활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2026년 9월 10일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1370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특화 데이터 활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구축·관리·분석 및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행정을 구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지역특화 데이터”란 지역 맞춤형 정책의 수립 및 사업 발굴에 활용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의 지역개발, 도시재생, 주거환경, 생활SOC, 지역경제, 문화·관광, 환경·안전·복지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특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구축·관리·분석 및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및 사업을 발굴·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주민이 데이터 활용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분석 결과와 지

역특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개·공유해야 한다.

제4조(지역특화 데이터의 수집·구축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수집하여 지역특화 데이터로 구축·관리할 수 있다.

1. 지역 전략적 개발사업 관련 행정 및 시설 현황 데이터
2. 관광객 유입·숙박·소비 동향 데이터
3. 도시재생, 주거환경, 생활SOC 이용 데이터
4. 환경·안전·복지와 관련된 주민 생활 데이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화 데이터

② 수집된 데이터는 표준화·통합화하여 관리한다.

③ 구청장은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야 한다.

제5조(지역특화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구청장은 지역특화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1. 지역 현황 및 주민의 정책수요 분석
2. 지역 맞춤형 정책 및 사업의 발굴과 우선순위 검토
3.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관리, 환경 개선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 수립
4. 중앙행정기관 및 울산광역시 공모사업 발굴·신청
5. 그 밖에 지역 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특화 데이터의 공개) ① 구청장은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지역특화 데이터 중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2. 국가안전이나 재난 대응 등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주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데이터 공개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주민 참여 및 민간 협력) ① 구청장은 주민·전문가·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지역특화 데이터 활용 및 공동 분석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특화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을 위하여 다른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공유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지역특화 데이터의 효율적인 수집·구축·관리·분석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동구의 지역개발, 도시재생, 주거환경, 생활SOC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특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분석·활용하여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및 사업의 발굴·우선순위 검토와 각종 공모사업에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역특화 데이터의 수집·구축 및 관리 (안 제4조)

라. 지역특화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안 제5조)

마. 지역특화 데이터의 공개, 주민 참여 및 민간 협력 (안 제6조~제7조)

바. 업무의 위탁 (안 제8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2026년 9월 10일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1371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대행)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진료에 관한 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의 범위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업무로 한다.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업무대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업무대행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외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업무대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4조(업무대행계약)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와 업무대행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계약을 위반한 경우
 4.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 자격이 정지된 경우
- ② 구청장은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업무대행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해지 사유를 적은 서면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업무대행 비용) 구청장은 「지역보건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소의 업무 중 진료 등에 관한 업무를 의료인에게 대행하게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나. 업무대행 및 업무대행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 다. 업무대행 계약 및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라. 업무대행 비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2026년 9월 10일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1372호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동구국민체육센터·꽃바위체육센터·동부체육센터”를 “동구국민체육센터·꽃바위체육센터·동부체육센터·동구파크골프장”으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제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사용 기간에 필요한 부대설비 등을”을 “사용기간 중 별도의 필요한 설비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의 홍보물(대회 등을 일시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은 제외한다)은 설치할 수 없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체육시설의 사용료 중 동구파크
골프장 일일 사용료 및 대관료는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 동구국민체육센터

구 분				대 상	사용료(원)	비 고
수 영	1회 사용			어린이	2,000	
				청소년		
				성 인	2,500	
	월	사용		어린이	35,000	· 1시간
				청소년	40,000	
				성 인	45,000	
		강습	주 4회	어린이	45,000	
				청소년	50,000	
				성 인	55,000	
아쿠아로빅	월	강습	주 4회	성 인	55,000	
헬 스	월	사용		청소년	45,000	
				성 인		

○ 화정체육관

구 분				대 상	사용료(원)	비 고			
탁 구 배드민턴	1회 사용			어린이	2,500	· 강습시간 외 사용	· 기본 3시간		
				청소년					
				성 인	3,000				
	월	사용		전 체	30,000				
					강습	주 2회		30,000	· 1시간
					주 3회	40,000			
음악줄넘기	월	강습	주 1회	어린이 청소년	30,000	· 매주 토요일 · 1시간			
농구·축구	월	강습	주 1회	어린이 청소년	35,000				
체육관 (2층)	대 관			전 체	35,000	· 1시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 전하체육센터

구 분				대 상	사용료(원)	비 고		
대왕암홀	대관	체육경기		전 체	60,000	· 1시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일반대관			90,000			
생활체조	월	강습	주 2회	전 체	20,000	· 1시간		
			주 3회		30,000			
	대관		30,000		· 1시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스피닝	월	강습	주 2회	전 체	33,000	· 1시간		
			주 3회		50,000			
탁 구	월	사용		전 체	55,000		· 기본 3시간 · 대관 중에는 사용할 수 없음	
배드민턴					50,000			
스쿼시					55,000			
탁 구		강습	주 4회		70,000	· 1시간		
배드민턴					60,000			
스쿼시					70,000			
탁구 배드민턴	1회 사용		어린이	2,500				
			청소년					
			성 인					3,000
스쿼시	1회 사용		전 체	4,500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2,000	· 1시간 기준 · 놀이시설 입장 기준 신장 130cm 이하		

○ 꽃바위체육센터

구 분				대 상	사용료(원)	비 고	
클라이밍	1회 사용			어린이	2,000	· 1시간	· 기본 2시간
				청소년			
				성 인	3,000		
	월	사용		전 체	30,000		
		강습	주 2회		40,000		
탁 구	1회 사용			어린이	2,500	· 1시간	· 기본 2시간
				청소년			
				성 인	3,000		
	월	사용		전 체	25,000		
		강습	주 2회		30,000		

○ 동부체육센터

구 분				대 상	사용료(원)	비 고
수 영	1회 사용			어린이	5,000	
				청소년		
				성 인	6,000	
	월	사용		어린이	45,000	
				청소년	50,000	
				성 인	55,000	
		강습	주 4회	어린이	55,000	· 1시간
				청소년	60,000	
				성 인	65,000	
아쿠아로빅	월	강습	주 4회	전 체	65,000	
생활체조	월	강습	주 2회		20,000	· 1시간
			주 3회		30,000	
	대관			전 체	30,000	· 1시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 동구파크골프장

(단위: 원)

구 분	동구민	관외자	비 고
일일 사용료	3,000	5,000	· 18홀 기준(3시간)
대관료	400,000		· 18홀 기준(1일)

○ 풋살장(히딩크 드림필드, 일산천 청소년 문화거리 체육시설)

구 분	사용료(원)		사 용 자 격	기 타
	평일	토·일· 공휴일		
일반인 (1시간)	20,000	25,000	· 히딩크 드림필드장에 한하여 장애인 우선 이용 · 8명 이상 사용 가능	· 일반인이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 시간당 5,000원을 가산 · 일반인이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 히딩크 드림필드장은 장애인 무료
장애인	무료	무료		

○ 동구야구경기장

구 분	사용료(원)		비 고
	평일	토·일· 공휴일	
1시간	35,000	45,000	· 울산광역시민이 아닌 사람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 1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 시간당 10,000원을 가산,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 · 동구민이 9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 · 5일 이상 전지훈련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 조명 사용 시 시간당 25,000원을 가산

※ “동구민”이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동구국민체육센터, 화정체육관, 전하체육센터, 꽃바위체육센터 및 동부체육센터 사용에 관한 공통사항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월 사용”이란 1개월 단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월 사용자는 1일 1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시중 요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 사용료는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 부대비용

구분		기준	사용료
냉·난방시설		시간당	· 대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음향설비		1일 1회	· 30,000원
집기	집기사용	-	· 탁자: 개당 3,000원 · 의자: 개당 500원 ※ 체육경기 시 면제
수도료	샤워장	-	· 샤워 시 1회 사용료 적용 (어린이·청소년 요금 적용)
관리비	정비 및 청소	1회	· 50,000원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13조 관련)

감면대상	감면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의 경우	면제
구를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연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을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면제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80
동구체육회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나 행사	100분의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100분의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100분의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사람	100분의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00분의 5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00분의 50
「울산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00분의 30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본인	100분의 30
동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단체 입장(20명 이상) 시	100분의 20
가임기 여성 수영 회원	100분의 10

1. 개정이유

- 동구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운영 기준 마련과 체육시설 사용료 등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추가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보훈부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동구파크골프장 휴무일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3호, 안 별표 1)
- 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15조제3항·4항 및 제16조제1항)
- 다.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 추가(안 별표 2)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2026년 9월 10일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607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합	계	합 계	593(8)	421(7)	19	46	107(1)
		정무직	1	1			
		일반직	591(8)	419(7)	19	46	107(1)
		별정직	1	1			
정 무 직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91(8)	419(7)	19	46	107(1)
	3급	소 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 계	6	5		1	
		서기관	4	4			
		과학기술서기관	2	1		1	
	5급	소 계	41	25	2	5	9
		행 정	26	17	2		7
		의 무	3			3	
		시 설	3	3			
		행정·사회복지	4	2			2
		행정·시설·녹지	1	1			
		행정·시설	1	1			
		환경·보건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1	
	6급	소 계	130(1)	98(1)	5	9	18
		행 정	65(1)	50(1)	5	1	9
		세 무	2	2			
		전 산	1	1			
		사회복지	5	3			2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일반직	6급	녹 지	1	1			
		보 건	1	1			
		환 경	1	1			
		시 설	13	13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6	6			
		행정·사회복지	11	4			7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3	3			
		행정·시설·녹지	1	1			
		행정·의료기술·보건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환경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방재안전	1	1			
		보건·간호	1			1	
		간호·의료기술	2			2	
		보건·간호·의료기술	2			2	
		수의·약무·간호	1			1	
		사무 운영	1	1			
		운 전	3	3			
	7급	소 계	191(2)	142(2)	9	17	23
		행 정	82(2)	57(2)	8	1	16
		세 무	12	12			
		전 산	1	1			
		사회복지	14	7			7
		사 서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일반직	7급	공 업	2	1		1	
		녹 지	3	3			
		해양수산	3	3			
		보 건	5	5			
		의료기술	4			4	
		간 호	4			4	
		환 경	2	2			
		시 설	26	26			
		방송통신	5	4	1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시설	4	4			
		행정·공업	1	1			
		행정·수의	1	1			
		환경·공업	1	1			
		농업·수의	1	1			
		간호·의료기술	2			2	
		보건·간호·의료기술	4			4	
		사무운영	0	0			
		기계운영	1	1			
		운 전	6	5		1	
	8급	소 계	171(2)	122(2)	3	12	34
		행 정	65(2)	43(2)		2	20
		세 무	7	7			
		전 산	2	2			
		사회복지	18	8			10
		사 서	2	2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일반직	8급	공 업	3	3			
		녹 지	2	2			
		해양수산	1	1			
		보 건	4	4			
		의료기술	4			4	
		간 호	4	1		3	0
		환 경	2	2			
		시 설	12	12			
		방송통신	2	2			
		방재안전	1	1			
		행정·사회복지	8	4			4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1	1			
		행정·녹지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2	2			
		시설·방재안전	3	3			
		간호·의료기술	1			1	
		보건·공업	1			1	
		환경·공업	4	4			
		숙 기	2		2		
		농림운영	1	1			
		시설관리	1	1			
		운 전	15	13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일반직	9급	소 계	51(3)	26(2)		2	23(1)
		행 정	22(3)	15(2)			7(1)
		전 산	1	1			
		사회복지	11	1			10
		시 설	6	6			
		의료기술	2			2	
		행정·방송통신·방재안전	1	1			
		공 업	1	1			
		보 건	1	1			
		행정·사회복지	6				6
별정직	6급 상당	계	1	1			
		소 계	1	1			
		비 서	1	1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수임.

1. 개정이유

-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정원: 591명 → 593명(증 2명)

1) 일반직: 589명 → 591명(증 2명)

나. 기관별 정원 조정(안 별표 1)

1) 본청: 419명 → 421명(증 2명)

다.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1)

1) 일반직: 589명 → 591명(증 2명)

가) 5급: 40명 → 41명(행정 증 1명)

나) 7급: 190명 → 191명(행정 증 1명)

다) 8급: 171명(변동없음)

- 증: 행정·사회복지 8급 1명, 시설·방재안전 8급 3명
- 감: 행정 8급 1명, 시설 8급 3명

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2026년 9월 10일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608호

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 반환”을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가”를 “구청장은”으로, “전부”를 “수강료 또는 시설 사용료의 전부”로,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도서관 운영”을 “강좌 운영 또는 시설 사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한 사정으로 강좌 및”을 “사정으로 강좌 운영 또는”으로, “취소된”을 “취소되거나 중단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본인의 의사로 수강 및”을 “이용자가 수강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 또는 시설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반환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16조 관련)

1.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 시기	반환금
도서관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때	진행하지 못한 수업 횟수에 해당하는 수강료
이용자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수강기간 1개월 미만)	수업 시작 전	수강료 전액
	총수업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	수강료의 3분의 2
	총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 경과	수강료의 2분의 1
	총수업시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이용자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수강기간 1개월 이상)	수업 시작 전	수강료 전액
	수업 시작 후	해당 월의 반환금과 남은 달의 수강료 전액

※ 해당 월의 반환금은 수강 기간 1개월 미만의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 시기	반환금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사용하지 못한 기간 또는 횟수에 해당하는 시설 사용료
도서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단된 경우	사용 시작 전	납부한 시설 사용료 전액
	사용 시작 후	사용하지 못한 기간 또는 횟수에 해당하는 시설 사용료
이용자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 시작 전	납부한 시설 사용료 전액
	사용 시작 후	사용하지 못한 기간 또는 횟수에 해당하는 시설 사용료

1. 개정 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수정 및 개선 권고 사항임
-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 중 운영자의 귀책 사유는 규정하지 않고 이용자의 귀책 사유만 규정하고 있어 운영자 및 이용자 각각의 귀책 사유에 대해 시설사용료의 반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변경(별표 3)
- 나.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2026년 9월 10일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609호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리, 점검 및”을 “정리 · 점검 또는 그 밖의”로, “인하여 울산광역시”를 “울산광역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2호”를 “구청장은 제1항제2호”로, “구청장이 임시 휴관일로 정한 때에는 휴관일시”를 “임시 휴관일을 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휴관 일시”로, “전에”를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유로 휴관할”을 “사유가 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기휴관일: 매주 월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일요일은 휴관한다.

③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 이유

- 꽃바위작은도서관 휴관일 변경(월→일)에 따라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여 도서관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작은도서관 휴관일 조정 규정을 신설(안 제3조제3항)
- 나.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2026년 9월 10일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610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방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 시험등은 제외하며, 필기시험에 한정한다)에 가산하는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은 임용권자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 또는 공고할 수 있다.

제13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미성년인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이 경우 영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어 특별승진임용되는 공무원에는 국가재난관리유공 정부포상 수상자를 포함한다.

제2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을 “근무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총 0.75점”을 “각각 총 0.75점”으로 한다.

11.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③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3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 중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격무·기피 업무에 계급의 변동 없이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26조의2제1항제1호 중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 한다.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제2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민원 업무 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하는 정기평정부터 적용한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3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데이터	기 사 :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 능 사 : 선체설계, 선체건조, 선박기관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 품질경영 기 능 사 : 자동화설비, 전자기기, 임베디드,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학	기 술 사 : 화학, 세라믹, 화학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학,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 업 기 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 업 기 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안전 산 업 기 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 업 기 사 : 종자, 식품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 업 기 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 업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 업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 업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 업 기 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산 업 기 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업,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항 공	일반항공	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 사 : 항공
	정 비	산업기사 : 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수도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지 적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측 지	
	교통시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기 사 :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사 :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 설 계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개발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기 능 사 : 전자기기,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조 리	조 리	기 능 장 : 조리 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 능 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 생	사 역	기 능 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 능 사 : 전기, 설비보전, 조경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감정평가사(7)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이터					
사서	사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직렬	직류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원자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업	축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의	수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건	보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보건의료정보관리 사(12) 안경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 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보건의료정보관리 사(8) 안경사(8) 방사성동위원소취 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 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보건의료정보관리 사(5) 안경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 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보건의료정보관리 사(2) 안경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직렬	직류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의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무		치과의사(2)				
약무	약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간호	간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수질						
	대기						
	폐기물						
항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설	건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자인		건축사(5)	건축사			
속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 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계급	연구관	연구사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기사(섬유, 의류)
	화 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안전, 화학분석)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5)
	작물보호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 3. 27. 이전 취득한 것을 말함.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렬	작류		
농업연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안전, 폐기물처리, 바이오 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농 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 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 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 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 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 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 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 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 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계설계)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영양사(5), 위생사(5)
녹지연구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 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 품제조)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업)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 품제조)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 품제조)
보건연구	의 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 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 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 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 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 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 (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직렬	직류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방재안전연구	안전관리		기사(방재)
	재난관리		기사(방재)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지도직 공무원

직렬	직류	계급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안전,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계급 직렬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데이터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숙 기	숙 기	한글숙기 1급	한글숙기 1·2급	한글숙기 1·2·3급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기능장(전자)	산업기사(자동화설비, 전자,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 시스템,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안전)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종자, 식품)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정)	임산가공, 조정)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안전,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어 로			
	해양교통 시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방 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직렬 \ 계급 직류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 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 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 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 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 지·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 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 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 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 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 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 리, 자연생태복원)
환 경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 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 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 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 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 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 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 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 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 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 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방재)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컴퓨터시스템,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기술			
	전송기술			
조리	조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 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정)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설비 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 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정) 기능사(전기, 설비보전, 조정)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2조제2항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헌자력법에 따른 자력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력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동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자력증 가산비용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 이 터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영사, 승강기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 업	기계운전	기술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철도 교통안전관리자
	조선	기술사 : 조선 기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능사 : 선체설계, 선체건조, 선박기관정비	
	일반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능사 : 자동화설비, 전자기기, 임베디드, 전자카드	
	원자력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원자로 조종감독자, 핵연 료물질취급감독 자, 방사성동위원 소취급자(특수, 일 반), 방사선취급감 독자, 원자로조종 사, 핵연료물질취 급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 업	금 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농산물품질관리 사
	식물검역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안전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 의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 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안전,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방사성 동 위 원 소 취 급 자 (일반), 방사선취 급감독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나무의사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나무의사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 조경, 산림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나무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산물품질관리사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업,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시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보 건	보 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재(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보건교육사3급
	방 역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용적용: 영양사, 위생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위생사
	수 질	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관리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위생사 정수시설관리사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환경	대 기	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능장 : 산림 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 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폐 기 물	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능장 : 산림 기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일반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수도토목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 설	측 지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도시교통 설 계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개발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건축사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술	기능사 : 전자기기,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설비보전, 조경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계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농촌지도	농업기계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공업연구	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화 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화 학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경영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 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산업기사: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작 물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농촌지도	농 업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농촌지도	원 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 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 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 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 술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농촌지도	농업경영	산업기사 :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농촌지도	농촌사회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연구	농 공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자동화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	축 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안전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가축인공수정사
농촌지도	축 산	산업기사 : 축산, 식품	
녹지연구	임 업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 경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촌지도	임 업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 :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기사 : 축산 산업기사 : 축산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수산자원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어촌지도	어 촌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해양수산 연 구	수산양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 술 사 : 해양, 어업,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식품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의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 상병리사, 보건의 료정보관리사, 방 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 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 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 사 2급
환경연구	환 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 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 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 측정분석사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 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 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 방지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 생사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자연생태복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설연구	토 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연구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건축사
방재안전 연구	안전 관리	기 사 : 방재	
	재난 관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1. 개정 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규 개정('26. 4. 7.)에 따라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제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류전형 시험위원 위촉 강화(안 제10조제1항)

나. 신규임용시험 자격증 점수 가산 사항 변경(안 제12조제2항)

다. 특별승진임용기준 정비(안 제23조제4호)

- 특별승진 심사대상자 인정 기준 중 격무·기피 업무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으로 구체화

라. 근무경력 가산점 기준 정비 및 신설(안 제23조의3제2항 및 제3항)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기준 정비 및 격무·기피 민원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기준 신설

마.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자격증 관련 사항 현행화
(안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4)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2026년 9월 10일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611호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별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5조 중 “제25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 실태를 매 반기 감사하고, 감사자를 지정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도의 평가계획에 따라 경영수지 분석 등 운영 전반을 평가해야 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및 평가를 할”을 “또는 평가를 실시할”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조례 제3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주 요 시 설	비고
동구국민체육센터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3(화정동)	수영장, 헬스장, 조깅코스	
화정체육관	울산광역시 동구 대송로 140(화정동)	체육관, 샤워실, 무대, 관람석	
전하체육센터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285(전하동)	대왕암홀, 탁구장, 스쿼시장, 생활체조실, 샤워실, 어린이놀이시설	
꽃바위체육센터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2가길 19(방어동)	클라이밍장, 탁구장,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돌고래 역도단 훈련장	
동부체육센터	울산광역시 동구 안산로 46(동부동)	수영장, 샤워실, 체온관리실, 생활체조실	
동구파크골프장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99-15번지 일원	파크골프장(18홀), 화장실	
히딩크 드림필드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279(전하동)	풋살경기장, 관람석, 족구장, 샤워장, 화장실	
일산천 청소년 문화거리 체육시설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443번지 일원	풋살경기장, 농구장	
동구야구경기장	울산광역시 동구 미포산업로 145(미포동)	야구경기장, 야구용품 보관장소, 휴게시설, 화장실, 선수대기실	

[별표 2]

체육시설별 일일 사용시간(조례 제9조 관련)

명 칭	사 용 시 간	비 고
동구국민체육센터	· 평일 06:00~22:00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06:00~19:00	
화정체육관	· 평일 09:00~22:00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09:00~19:00	
전하체육센터	· 평일 09:00~22:00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09:00~19:00	
꽃바위체육센터	· 평일 09:00~21:00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09:00~19:00	
동부체육센터	· 평일 06:00~22:00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06:00~19:00	
동구파크골프장	· 평일 09:00~18:00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09:00~18:00	※하절기·동절기 사용 시간은 변경될수있음
히딩크 드림필드	· 하절기(4월~ 10월) 06:00~22:00 · 동절기(11월~3월) 07:00~22:00	
일산천 청소년 문화거리 체육시설		풋살경기장
동구야구경기장		
	· 하절기(4월~10월) 06:00~23:00 · 동절기(11월~3월) 09:00~23:00	

※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휴무일은 제외한다.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접수 번호			
신청인	단체(법인)명				연락처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사용 시설	시 설 명								
	부대시설		☐ 음향시설() ☐ 냉·난방시설() ☐ 조명() ☐ 체육용품() ☐ 기타시설()						
체 육 경기(행사)명						사용 인원		명	
사용 기간	당 초		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일 시간)						
	변 경		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일 시간)						
	변경사유								
사 용 료	산출내역		☐ 기본 사용료(원) ☐ 부대시설 사용료(원)						
	합 계		원						
감면여부		☐ 해당 ☐ 비해당		감면사유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 및 신청자 확인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체육시설 사용허가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까지
-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			
신	주 소		
청	단체(법인)명	(연락처 :)	
인	성명(대표자)		
체육경기(행사)명		사용인원(명)	
사용	시 설 명		
시설	부대시설		
사용일시		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일 시간)	
구 분		금 액(원)	산출근거
기본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그 밖의 사용료			
합 계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인)			

허 가 조 건

1. 사용자는 관람객 및 참가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사용자가 변상한다.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4. 행사 시 발생한 쓰레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처리해야 한다.
5. 사용허가의 취소·변경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허가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별지 제3호 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단체(법인)명		연 락 처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용허가 내 용	시설명		허가번호		
	사용일시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료	원	납 부 일	년 월 일	
취소사유					
반환금 산출내역			반환금액	원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까지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체육시설 부대설비 설치 승인 신청서					
사용허가 번호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사 용 자	주 소				
	단체(법인)명		연 락 처		
	성명(대표자)				
설치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총 일, 시간)			
부대설비 신청내용	설치시기				
	설치사유				
	구체적 내역 (도면첨부)				
※ 아래의 승인조건을 읽으신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승 인 조 건					
1.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철거 및 원상복구 해야 하고 설비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2. 체육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비 설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체육시설 부대설비 설치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체육시설 부대설비 설치 승인 신청 및 신청자 확인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체육시설 부대설비 설치 승인 신청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까지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체육시설 부대설비 설치 승인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신청서			처리기간
			30일
법인(단체)명		연 락 처	
주 소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구청장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른다) 1부 2.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1부 3. 단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단체인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고로 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해당하는 경우)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신청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의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 및 신청자 확인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해당 업무의 기록물 보존기간까지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30일	
법인(단체)명				연 락 처	
주 소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기간		당초		연장	
사유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2조제4항 및 제5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기간을 연장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구청장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른다) 1부 2.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1부 3. 단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단체인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고로 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해당하는 경우)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기간 연장신청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의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기간 연장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기간 연장 신청 및 신청자 확인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기간 연장 신청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까지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기간 연장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1. 개정 이유

- 미반영된 체육시설 현황 및 사용시간을 정비하여 이용 편의성과 행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상위 조례 개정사항 및 상위법령에 따른 서식의 인용 조항·용어 등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신규 및 미반영 체육시설 명칭과 소재지 추가 등(안 별표 1)
- 나. 신규 및 미반영 체육시설 사용시간 추가(안 제4조)
 - 체육시설별 사용시간 표 삭제 및 별표 신설(안 별표 2)
- 다. 상위 조례 개정사항 반영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9조, 제15조 및 제16조)
- 라. 법령 간 통일성 및 적정성 확보(안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까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2026년 9월 10일

울산광역시 동구 훈령 제328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표

실과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합 계			421	
기 획 예산실	계		20	
	일반직	소 계	20	
		5급	1	행정1
		6급	7	행정7
		7급	7	행정4, 행정(임기제)2, 시설1
		8급	5	행정5
경 제 정책과	계		15	
	일반직	소 계	15	
		서기관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6	행정3, 공업1, 행정·시설2
		8급	3	행정2, 행정(임기제)1
노 사 외국인 지원과	계		12	
	일반직	소 계	12	
		5급	1	행정1
		6급	3	행정3
		7급	4	행정4
		8급	3	행정3
		9급	1	행정1

실과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관광과	계		12	
	일반직	소 계	12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행정·시설1
		7급	6	행정4, 행정(임기제)1, 시설1
		8급	2	행정2
세무1과	계		18	
	일반직	소 계	18	
		5급	1	행정1
		6급	4	세무1, 행정·세무3
		7급	8	세무7, 행정·세무1
		8급	5	행정1, 세무4
세무2과	계		15	
	일반직	소 계	15	
		5급	1	행정1
		6급	3	세무1, 행정·세무2
		7급	6	세무5, 행정·세무1
		8급	4	행정1, 세무3
		9급	1	행정1
교육 정책과	계		18	
	일반직	소 계	18	
		서기관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3	행정3
		7급	4	행정3, 사서1
		8급	7	행정3, 행정(임기제)1, 사서2, 방송통신1
		9급	2	행정2

실과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복지지원과	계		19	
	일반직	소 계	19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7급	4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1
		8급	7	행정1, 사회복지4, 행정·사회복지2
		9급	3	행정2, 사회복지1
노인 장애인과	계		15	
	일반직	소 계	15	
		5급	1	행정1
		6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2
		7급	5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8급	4	행정1, 시설1, 행정·사회복지2
		9급	1	행정1
아동 가족과	계		19	
	일반직	소 계	19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5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7급	4	행정2, 사회복지2
		8급	8	행정4, 사회복지4
		9급	1	행정1

실과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총무과	계		25	
	일반직	소 계	23	
		부이사관	1	행정1
		서기관	1	행정1
		5급	2	행정2
		6급	5	행정3, 사무운영1, 방송통신1
		7급	8	행정5, 보건(임기제)1, 방송통신2
		8급	6	행정4, 행정(임기제)1, 방송통신1
	정무직		1	구청장
	별정직	소 계	1	
		6급상당	1	비서1
자 치 행정과	계		14	
	일반직	소 계	14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전산1
		7급	5	행정4, 전산1
		8급	3	행정1, 전산2
		9급	2	행정1, 전산1
문 화 체육과	계		13	
	일반직	소 계	13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4	행정3, 시설1
		8급	3	행정1, 보건1, 시설1
		9급	1	행정1

실과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회계과	계		22	
	일반직	소 계	22	
		5급	1	행정1
		6급	5	행정3, 운전2
		7급	8	행정4, 행정·세무1, 시설1, 기계운영1, 운전1
		8급	8	행정1, 공업2, 행정·시설1, 운전4
민원 지적과	계		19	
	일반직	소 계	19	
		5급	1	시설1
		6급	6	행정2, 시설3, 행정·세무1
		7급	4	행정1, 시설3
		8급	3	행정1, 시설2
해양 수산물	계		15	
	일반직	소 계	15	
		서기관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3	행정·농업1, 행정·해양수산물2
		7급	6	해양수산물3, 시설1, 행정·수의1, 농업·수의1
공원 녹지과	계		17	
	일반직	소 계	17	
		5급	1	행정·시설·녹지1
		6급	3	녹지1, 행정·시설1, 행정·시설·녹지1
		7급	8	행정1, 녹지3, 시설2, 행정·시설1, 운전1
		8급	5	행정1, 녹지2, 행정·녹지1, 농림운영1

실과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자 원 순환과	계		23	
	일반직	소 계	23	
		5급	1	행정1
		6급	4	행정2, 행정·환경1, 운전1
		7급	7	행정3, 환경1, 운전3
		8급	11	행정2, 운전9
환 경 위생과	계		21	
	일반직	소 계	21	
		5급	1	환경·보건1
		6급	4	보건1, 환경1, 행정·보건1, 행정·환경1
		7급	7	행정1, 보건4, 환경1, 환경·공업1
		8급	8	보건3, 환경2, 환경·공업3
안 전 총괄과	계		23	
	일반직	소 계	23	
		과학기술 서기관	1	과학기술1
		5급	1	행정1
		6급	6	행정4, 시설1 행정·방재안전1
		7급	7	행정3, 행정·시설1, 방송통신2 행정·방재안전1
		8급	7	행정1, 시설1, 방재안전1, 간호1, 행정·방송통신1, 행정·시설·방재안전2
		9급	1	행정·방송통신·방재안전1

실과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건설과	계		19	
	일반직	소 계	19	
		5급	1	시설1
		6급	4	행정1, 시설3
		7급	7	행정1, 시설5, 행정·공업1
		8급	4	행정1, 시설1, 시설·방재안전1 환경·공업1
		9급	3	시설2, 공업1
도시과	계		15	
	일반직	소 계	15	
		5급	1	행정·시설1
		6급	4	행정1, 행정(임기제)1, 시설2
		7급	6	행정2, 시설4
		8급	4	행정1, 시설3
교통 행정과	계		15	
	일반직	소 계	15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행정·시설1
		7급	5	행정4, 시설1
		8급	4	행정2, 공업1, 시설관리1
		9급	2	행정1, 시설1
건축 주택과	계		17	
	일반직	소 계	17	
		5급	1	시설1
		6급	4	시설4
		7급	6	시설6
		8급	4	시설3, 시설·방재안전1
		9급	2	시설2

[별표 2]

의회사무과 지방공무원 정원표

실과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의 회 사무과	계		19	
	일반직	소 계	19	
		5급	2	행정2
		6급	5	행정5
		7급	9	행정4, 행정(임기제)4, 방송통신1
		8급	3	속기2, 운전1

1. 개정이유

○ 구청장 부속실 기능을 강화하여 대내·외 협업 및 현안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총 정원: 593명(증 2)
- 나. 세부 정원 조정안

(단위: 명)

부 서 명		정 원			조 정 내 역
		현행	조정	증감	
계		591	593	증 2	
기획예산실		20	20	-	
경제정책국	경제정책과	15	15	-	
	노사외국인 지원과	12	12	-	
	관광과	12	12	-	
	세무1과	18	18	-	
	세무2과	15	15	-	
교육복지국	교육정책과	18	18	-	
	복지지원과	18	19	증 1	• 8급 증1(행정·사회복지)
	노인 장애인과	15	15	-	
	아동가족과	19	19	-	

부 서 명		정 원			조 정 내 역
		현행	조정	증감	
행정지원국	총무과	24	25	증 1	• 5급 증1(행정)
	자치행정과	14	14	-	
	문화체육과	13	13	-	
	회계과	22	22	-	
	민원지적과	19	19	-	
해양환경국	해양수산과	15	15	-	• 8급 증 1(시설·방재안전) • 8급 △ 1(시설)
	공원녹지과	17	17	-	
	자원순환과	23	23	-	
	환경위생과	21	21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23	23	-	
	건설과	19	19	-	• 8급 증 1(시설·방재안전) • 8급 △ 1(시설)
	도시과	15	15	-	
	교통행정과	15	15	-	
	건축주택과	17	17	-	• 8급 증 1(시설·방재안전) • 8급 △ 1(시설)
보건소	보건행정과	24	24	-	
	건강관리과	22	22	-	
의회	의회	19	19	-	• 7급 증 1(행정(임기제)) • 8급 △ 1(행정(임기제))
동	동	107	107	-	